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신청 방법·절차 및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 방법·절차,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를 “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제56조의6제8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제56조의6제8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48조의3제5항”을 “법 제48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영 제56조의6제5항”을 “영 제56조의6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영 제19조의3제5항”을 “영 제56조의6제2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려”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한다.

제16조의4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10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제20조 중 “제56조의6제6항제2호”를 “제56조의6제8항제2호”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1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독촉장의 전자송달)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

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송달 방법, 전자송달 신청·변경·철회의 적용시기, 전자송달 철회 이후 재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3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48조제2항”을 “영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별지 제55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 제55호의6서식”으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7제5항에 따라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피보험자 및 징수사무 지원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22호의3, 별지 제22호의4, 별지

제22호의5, 별지 제22호의6, 별지 제22호의10, 별지 제22호의11, 별지 제22호의12, 별지 제22호의14, 별지 제22호의15, 별지 제22호의16, 별지 제22호의19, 별지 제31호의2, 별지 제31호의3, 별지 제34호의2, 별지 제34호의3, 별지 제35호, 별지 제38호의2, 별지 제38호의3, 별지 제38호의5, 별지 제38호의6, 별지 제38호의7, 별지 제46호, 별지 제5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55호의2, 별지 제55호의3, 별지 제 5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 55호의5, 별지 제55호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 ---------- 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제48조의3제8항제1호----------

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③ ---------- 제48조의3제8항제1호----------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 제56조의6제8

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 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항제1호----------.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 제56조의6제8항제1호----------. ----------

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② (생 략)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7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② (생 략)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	③ ------ 영 제56조의6제7항----------

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노무제공자의 월평균 보수 통보)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노무제공자의 월평균 보수 통보) 영 제56조의6제2항----------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월 보수액 신고서----------.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 제48조의3제8항제2호----------.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 제48조의3제8항제2호----------

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⑤ ---------- 제48조의3제8항제2호----------.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제48조의3제8항제2호----------

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 제56조의6제8항제2호----------.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② (생 략)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	③ ---------- 제48

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의3제8항제3호----------. ----------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 제48조의3제8항제3호---------- ----------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 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 제56조의6제8항제3호---------- ----------.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② ---------- 제56조의6제8항제3호----------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③ ---------- 제56조의6제8항제3호----------.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 제48조의3제8항제3호----------.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

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제48조의3제8항제3호----------.
<신 설>	제32조(독촉장의 전자송달)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

	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송달 방법, 전자송달 신청·변경·철회의 적용시기, 전자송달 철회 이후 재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8조의3제8항제3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8항제3호----------.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③ ---------- 제48조의3제8항제3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 제48조의3제8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 제48조의3제8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 제56조의6제8항제3호----------

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 ----------. ② ---------- 제56조의6제8항제3호----------.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3항----------.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

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48조의3제8항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 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4. ---------- 제48조의3제8항제3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	제41조(증표) ---------- 제48조의3제8항제4호 ----------

다. <신 설>	--. 제42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7제5항에 따라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피보험자 및 징수사무 지원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하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42조의3(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대학·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④ (생 략)	---------- 별지 제55호의5서식---------. 1.·2.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55호의6서식----------. ③·④ (현행과 같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공동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 (신청 시 괄호에 "√" 표시를 합니다)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 있음 [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8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사유	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 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고용)노무제공자 수 명	(산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명	소멸일	
(고용)예술인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8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 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장	상호・법인명 / 공사명 또는 유기사업명
	소재지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 고용보험업종코드
산재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 산재보험업종코드
대규모 기업	[ ]해당 [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6조의5제6항제1호・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 및 신고・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채용(이직) 시 채용(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자격취득(상실/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고용・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 ・ 단기노무제공자(고용・산재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업종코드
	소 재 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업종코드
	소 재 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업종코드
	소 재 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업종코드
	소 재 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업종코드
	소 재 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안>

(앞쪽)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 승인 [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 · 법인명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장	명칭 · 공사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산재보험 업종코드	
보험관계 소멸일			
불승인 사유			
소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6조의5제6항제1호·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험관계 소멸(해지) 안내사항		
소멸사유	소멸시기	비고
사업의 폐업・종료	폐업・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 1부 제출
보험계약의 해지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1부 제출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권소멸 조치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달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 후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건강보험증 수령자~~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안>

(　　)년도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구분 / 월별	임금		전월 말 현재 피보험자수	당월 중 피보험 자격취득자수	당월 중 피보험 자격상실자수	당월 말 현재 피보험자수	당월 보수지급 피보험자수	당월분 피보험자보수총액	원천공제액
	인 원	보수총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56조의6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개정안 >

(　　)년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구분 / 월별	보 수		노무제공사업주 수	노무제공사업주 원천공제액	피보험자 수	피보험자 보수총액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인 원	보수총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 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 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무원·교직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
-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보험료 ([ ]납입고지/[ ]독촉장) 전자고지 [ ]신규 [ ]변경 [ ]철회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 )		
	[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그 밖의 방법(안내방법:)		
수신자	성명	대표자와 관계	연락처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납입고지/[ ]독촉장) 전자고지 [ ]신규 [ ]변경 [ ]철회

세대주	증번호(납부자번호)	세대주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인터넷 홈페이지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그 밖의 방법(안내방법:)		
수신자	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제3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해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 및 독촉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납입고지 및 독촉장과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 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무원·교직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보험"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
-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 표시를 하고, 선택한 고지방법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그 밖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괄호 안에 고지사실 안내문의 수신방법을 적습니다.

    ※ '그 밖의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곳 중 공단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현행>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예술인용)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②연간 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종사자 코드	⑤연간 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⑦일용근로자 등 보수총액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근로자 종사 사업			-				-
	예술인 종사 사업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⑦_1 고용허가 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⑨합계		②+⑦+⑧+⑭		-	근로자 종사 사업(⑤+⑦+⑯)			-
					예술인 종사 사업(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⑩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사업장의 보수총액(원)		

⑪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⑬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⑭연간보수총액(원)	⑮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근무지코드	⑯연간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위 ⑯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부과구분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월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28.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2. ②란, ⑤란, ⑭란 및 ⑯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의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3. ③,⑥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이미 고용・노무제공 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는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④란의"종사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⑦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⑦_1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은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정정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예술인용)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입일)	(전출일)	②연간 보수총액(원)	취득일 (전입일)	(전출일)	③종사지 코드	④연간 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뒤쪽 작성방법 4번 참조)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근로자 종사 사업	
				예술인 종사 사업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산재보험만 해당)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⑦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 제외)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실업급여만 적용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외국인근로자				
⑨ 합계	산재보험	②+⑤+⑦+⑧+⑭		고용보험	근로자 종사 사업(④+⑥+⑮)
					예술인 종사 사업(④+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⑪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⑤,⑥ 또는 ⑦, ⑧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의 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입일)	전출일	⑭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전입일)	전출일	③종사자 코드	⑮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위 ⑮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부과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월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28.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2. ②란, ④란, ⑭란 및 ⑮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의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3. ③란의"종사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⑤,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1 란은 ⑥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정정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9.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전출일)' 란에 전보된 일자를 기재하시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 란에 전입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6조의5제6항제3호・제56조의6제6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현행>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 · 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 · 보수월액 · 월평균 보수액)(원)	자격 취득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 · 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 · 교직원 직종명/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나목·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0	0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0	0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0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0	x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0	x	0	0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0	x	x	0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0	0	x	0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개정 2023. 1.1.> <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원)	자격취득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부호	특수직종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직종부호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 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취득대상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부호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부호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공통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 (국민연금) YYYY. MM. DD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 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란의 "희망[ ]" 에 "√"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상실 연월일" 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사유" 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 <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1서식] <현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관 리 번 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	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⑤일용근로자 등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일용근로자			-	⑤_1.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기예술인						
		-					
⑥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자활근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뒤쪽 ⑩번란에 작성합니다.

⑦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업종변경 후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보수총액 (원)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제48조의2제8항제2호 ·제48조의3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⑩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대상 근로자만 작성)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	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위 ⑩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번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⑩번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 수정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근로자)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내려 받거나 고용 · 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2. ①,③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① 근로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②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②,④번란의 "월평균보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이미 상실(고용종료)된 종사자의 월평균보수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 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⑤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의 연간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⑤_1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보수"는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⑥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⑧번란의 "매월 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1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관 리 번 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전입일)	①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전입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③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④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근로자 종사 사업
				예술인 종사 사업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⑤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 근로자(일용 제외)		④-1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 근로자 보수총액 (실업급여만 적용제외)	
	⑥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외국인 근로자			

※"자활근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 ⑩번란에 작성합니다.

⑦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업종변경 후 (. . ~ . .)
사업장보수총액 (원)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제48조의2제8항제2호 ·제48조의3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⑩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대상 근로자만 작성)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전입일)	⑪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전입일)	⑫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위 ⑩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⑫번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 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⑩번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 수정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근로자)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내려 받거나 고용 · 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2. ①,②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가. 근로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③, ④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들의 연간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4. ④-1란은 ④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⑤, ⑥번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⑦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⑧번란의 "매월 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취득일을 기재하시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서(　　년　　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노무제공플랫폼의 경우만 적습니다)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 보수액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 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월 보수액"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월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자만 기재 (2쪽 ※선택란 참조)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원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원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제125조의9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평균보수”(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를 적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 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 · 시멘트 · 철강재 · 위험물질 · 자동차 · 곡물가루 · 곡물 · 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963),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의3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6제1항)~~. 5.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하단 직종별 추가입력번호 등 표에 있는 번호 중에서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은 직종이 택배기사(직종부호: 944), 퀵서비스기사(직종부호: 957)또는 화물차주(직종부호: 952~956, 961~966)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되는 배송수단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선택)에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5. 유통배송기사 등의 월 소득란은 직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같은 조 제13호마목・바목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62, 963), 유통배송기사(직종부호: 964, 965, 966)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월합계액을 적습니다.

※ 선택			
	방문판매원	입직 유형	① 월 기준 소득 ・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 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기계 종류	① 불도저 ② 굴착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안정기 ⑪ 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⑫ 콘크리트피니셔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기 ⑲ 쇄석기 ⑳ 공기압축기 ㉑ 천공기 ㉒ 항타 및 항발기 ㉓ 자갈채취기 ㉔ 준설선 ㉕ 특수건설기계 ㉖ 타워크레인 ㉗ 콘크리트믹서트럭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실연]	[기술지원]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57 퀵서비스기사
	944 택배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9 골프장캐디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택배 지 · 간선기사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배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주점 식자재・식품 운송・배송)
	952 건설기계조종사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식품 운송・배송)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5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상실 코드	상실사유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이직일	휴대전화번호	이직사유[√]	
						해당 연도	전년도	해당 월	전월			공통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만 작성
1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2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3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2호·제125조의9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계약조건(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 파기 포함) , 26.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 이라 합니다)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신고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2.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3.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전속성 없음” 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단기 예술인 / [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분)

[ ]산재보험 입직·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 체류자격				
직종 부호				
산재 건설기계번호				
산재 휴대전화번호				
산재 사업자등록번호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 6 7 8 9 10 / 11 12 13 14 15 / 16 17 18 19 20 / 21 22 23 24 25 / 26 27 28 29 30 / 31	1 2 3 4 5 / 6 7 8 9 10 / 11 12 13 14 15 / 16 17 18 19 20 / 21 22 23 24 25 / 26 27 28 29 30 / 31	1 2 3 4 5 / 6 7 8 9 10 / 11 12 13 14 15 / 16 17 18 19 20 / 21 22 23 24 25 / 26 27 28 29 30 / 31	1 2 3 4 5 / 6 7 8 9 10 / 11 12 13 14 15 / 16 17 18 19 20 / 21 22 23 24 25 / 26 27 28 29 30 /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과고지사업장 종사자에 한함)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서식인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하수급인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통지한 하수급인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4.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7 퀵서비스기사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배송)
	944 택배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8 대리운전기사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주점 식자재·식품 운송·배송)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캐디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식품 운송·배송)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1 택배 지·간선기사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착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9서식] <개정>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 보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사업장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신고가 누락된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 또는 노무제공자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의 [　]선납 [　]충당 [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예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 사업주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 법인 [ ] 개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무제공자 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을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공단에 각각 지원신청해야 하며,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공단이 매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란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경감신청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48조의2제8항 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란에 ‘√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 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관련 증명 서류” 란에는 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경감 결정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구분	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 결정 금액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고용						
산재						
계						

결정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반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사 명		성립일

과납액·보험급여(충당·반환해야 할 금액)

연도/분기 (월)	보험별	종목 (급여종류)	과납 발생일 (보험급여 지급일)	과납액 (보험급여)	이자금액	합계

충 당 내 용

충당 사업장관리번호	연도/분기 (월)	종목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반 환 내 용

연도/분기 (월)	종목	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반환금 지급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56조의5제6항제3호·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연도	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	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안>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③대표자
	②상호·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④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체납액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 납부 신청금액		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 납부 신청내용

분납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분할 납부 신청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 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분할 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 ⑪란은 분할 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으로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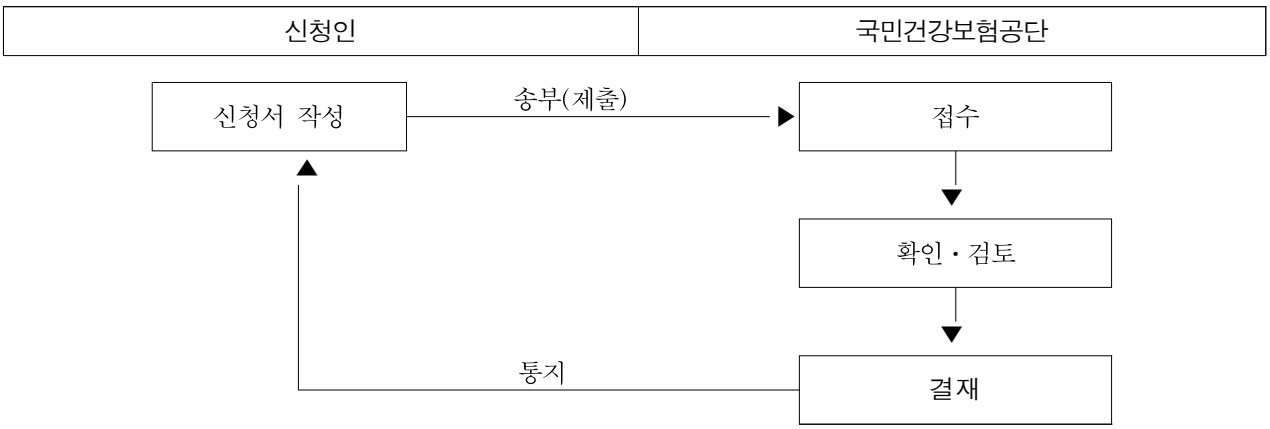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5서식] <개정안>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 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 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6서식] <개정안>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 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 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 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분할 납부 승인취소 사유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7서식] <개정안>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속 개시일자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56조의5제6항제3호·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앞쪽)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문서번호

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인가일	인가취소일

인가취소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안>

(앞쪽)

제　　호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근로복지공단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제48조의3제8항제4호·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분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명칭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금 신청명세

①총신청액	②징수사무대행지원금	③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원	원	원

징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신청 명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산정 명세	금액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플랫폼사업자 피보험자 및 징수사무 지원 처리 장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신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피보험자 및 징수사무 지원 처리장부

(　　)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용개시번호	노무제공자 성명	노무제공자 주민번호	일반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자지원금신청액			징수사무지원금신청액		
			피보험 신고구분	대상월	신고일자	대상월	신고일자	일반노무자 지원금	단기노무자 지원금	합계	법정납부 여부	신청대상 여부	합계

297㎜×210㎜(백상지 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신설>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통지서

문서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지원금 청구액		지급 결정액	
지원금 종류			
불인정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5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년 □3월 · □9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명	학위과정 부호	휴대전화번호
1					
2					
3					
4					
5					

※ 학위과정 부호: 1(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2(전문기술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3(전문학사·학사과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학생연구자의 명단은 다음 각 목의 제출 기한일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3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까지 제출 나. 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까지 제출 2. 학생연구자의 명단은 휴학생·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 번째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러한 사람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 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6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　　년 □3월 · □9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번	신고 부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명	학위과정 부호	휴대전화번호	변경사유 부호	학생연구자 해당일/ 비해당일
1								
2								
3								
4								
5								

※ 신고 부호: 1(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학위과정 부호: 1(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2(전문기술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3(전문학사·학사과정)

※ 변경사유 부호: 1(연구개발과제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2(학생연구자의 휴학, 퇴학 등 학적 변동), 3(그 밖에 학생연구자의 질병 등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학·연구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따라 제출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변경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습니다(그 사유는 "변경사유 부호"란에 기재).
2. "신고 부호"란에는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학위과정 부호"란에는 휴학생·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 번째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러한 사람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 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
4. "학생연구자 해당일/비해당일"란의 경우, 변경사유 부호를 "1"로 작성한 경우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된 날을, "2"로 작성한 경우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